

맞춤형복지급여 신청 안내

- 2015.7.1.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변경됩니다.
-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4가지로 차등(개별)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.
-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▣ 신청 대상 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모든 수급권자

※ 기존 수급자는 재신청 불필요

▣ 신청 기간 : 2015.6.1. ~ 계속

▣ 조사 범위 : 선정 가구의 소득 및 재산, 부양의무자(직계존비속) 가구의 소득 및 재산

▣ 신청 절차

- 동 주민센터 방문 → 초기상담 및 서류 안내 → 서류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→ 동 주민센터 접수 → 구청 조사결과 통보

※ 가급적 내방하여 상담 요망

▣ 선정기준

【 ***** 】

가구규모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2015년 기준중위소득	1,562,337	2,660,196	3,441,364	4,222,533	5,003,702	5,784,870	6,566,039
생계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28%이하)	437,454	744,855	963,582	1,182,309	1,401,037	1,619,764	1,838,491
의료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40%이하)	624,935	1,064,078	1,376,546	1,689,013	2,001,481	2,313,948	2,626,416
주거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43%이하)	671,805	1,143,884	1,479,787	1,815,689	2,151,592	2,487,494	2,823,397
교육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50%이하)	781,169	1,330,098	1,720,682	2,111,267	2,501,851	2,892,435	3,283,020

▣ 문 의 : ○○동 주민센터 (☎02-3396-○○○○)